

[별지 제2호서식] <신설 2015.8.28, 2015.11.2, 2015.12.31, 2016.7.13>

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				접수번호
(☐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☐ 소득50% 이하자, ☐ 소득70% 이하자)				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(0) -	집전화() -	
혼인 및 출생신고일	① 혼인신고일(재혼포함)			년 월 일
	② 혼인신고 이후 자녀 출생신고(입양신고)일(주민등록등본 기준)			년 월 일
신청순위	☐ 1순위 (혼인3년 이내 유자녀)	☐ 2순위 (혼인3년초과 5년 이내 유자녀)	☐ 3순위 (혼인5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)	☐ 기타 (혼인5년 이내 소득70% 이하)
주택 및 자산현황	☐ 무주택 ☐ 자산 및 자동차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)			
	<작성요령 및 유의사항> 1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. 2. 자산 및 자동차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의 경우 표기하지 않습니다. 3.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.			
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
년 월 일 신청인(세대주) (인)				
시장(군수·구청장)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(갱신계약 포함)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)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				

☐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(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평가	평점
① 자녀의 수(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)	가.3인이상 나.2인 다.1인	3점 2점 1점	()인	()점
② 신청인의 나이(만)	가.30세 미만 나.30세 이상 35세 미만 다.35세 이상	3점 2점 1점	()세	()점
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(인정회차 기준,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)	가.24회 이상 납입 나.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.6회이상 12회미만 납입	3점 2점 1점	()회	()점
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·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(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)	가.24개월 이상 나.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.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3점 2점 1점	()개월	()점
⑤ 신청인의 당해시(특별시, 광역시 포함)·군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	가.3년 이상 나.1년 이상 3년 미만 다.1년 미만	3점 2점 1점	()개월	()점
⑥ 장애인 등록 여부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(신청인 포함)	2점	등록증 교부여부 (o , x)	()점
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	65세이상 직계존속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)부양	1점	부양여부 (o , x)	()점
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.				
	총점	점	소속	확인자 (인)